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80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윤준병・박민규・주철현

조계원 • 정동영 • 박홍배

이원택・박희승・허 영

김우영 · 김태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근로자와 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 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 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9조의4).
- 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5조의6).
-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 제 등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7조).
- 라.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8조의2).
- 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6조).
- 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 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8조의9).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2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2030년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 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 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2030년----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 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

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④ (생 략)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 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 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 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 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⑥ ~ ⑧ (생 략)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저
 - ~ ④ (생 략)
 -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2030년</u>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세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5

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 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강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⑥ ~ ⑨ (생 략)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저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 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 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 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u>2030년</u>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세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 ①
<u>2030</u>
<u>년</u>

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 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②
<u>2030년</u>

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⑧ (생 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

<u>.</u>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2030년</u>

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 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 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한다.

- 1. · 2. (생략)
- ④ ~ ① (생 략)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 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3
<u>2030</u>
<u>년</u>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④ ~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 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 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 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 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 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 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 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 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1. ~ 7. (생략)
- ②·③ (생 략)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

<u>2030년</u>
·.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u>2030년</u>

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 1. 2.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 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 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 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 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 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 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 1항제3호를 적용한다.
 - 1. · 2. (생략)
 -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

1 0 (처체코 가ㅇ)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
동산세 과세특례) ①
2030
<u>년</u>
1.・2. (현행과 같음)
②

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u>2025년</u> 12월 31일까 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 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④ (생 략)

<u>2030년</u>
③・④ (현행과 같음)